



중앙방역대책본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4-2판)」
개정 안내

1. 관련

- 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및 제83조
- 나. 중앙방역대책본부-25866(2021.11.25.)호
- 다.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(2022.1.24.)

2.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「**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4-2판)**」를 붙임과 같이 개정·안내하니, 지자체별로 행정명령 재발령 등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 개정사항

- (마스크 종류 강화) 넥워머·바라클라버는 과태료 부과 대상, 3밀시설 등 보건용 마스크 우선 권장
- (올바른 착용법 강화) 마스크 액세서리 사용 자제
- (관리·운영자 처분부담 경감)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

나. 시행예정일: 2022. 2. 15.(화)

붙임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4-2판). 끝.

